

2022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2022. 12. 06.(화)



I 용역 개요

1. 용역 배경 및 목적

-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인권경영을 확산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과 인권 NAP 수립 촉구,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발간, 인권경영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도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관 맞춤형 인권경영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용역 수행내용

<표 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수행 범위

용역범위	세부내용
가. 인권경영 추진현황 파악	· 2022년 기관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인권경영 추진현황 파악
나. 인권영향평가 계획수립 및 실시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구분하여 인권영향평가 대상자 선정 및 체크리스트 개발 · 인권영향평가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대상 체크리스트 작성방법 및 평가내용 등 교육 실시 · 개발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료검토,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 실시
다.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 인권영향평가 준비·실시·결과를 종합한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인권영향평가 결과 시사점, 개선방안, 우선순위 제시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보고

3. 인권영향평가 수행과정

<표 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수행과정

구분	수행내용	수행일정 (10.12.~12.11.)
①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방법, 기간 등 협의 · 연구원 인권경영 추진현황 점검 	10월 2~3주
② 평가지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평가지표 검토 및 보완 	10월 3~4주
③ 실무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부서 담당자 대상 인권영향평가 교육 실시 	11월 1주 (2022.11.02.)
④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평가(담당부서 자체평가) · 2차 평가(전문가 인터뷰) 	10월 4주~ 11월 2주
⑤ 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평가 결과 집계 	11월 3주
⑥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분야 및 시사점 도출 · 개선사항 도출 	11월 3~4주
⑦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최종 결과 보고 	12월 1주 (2022.12.06.)

II 대내외 인권경영 환경분석

1.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1) 인권 관련 국제적 기준·제도

<표 2-1> 인권경영 관련 국제적 기준

구분	내용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1976년)	· ‘인권’ 조항에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 대하여 국제적 인권의 프레임워크, 국제적 인권의무 및 관련법, 기업 내에서 권고해야 할 사항 등 총 6가지를 제시(2011년 개정)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3자선언 (1977년)	· 다국적기업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 · 일반정책, 고용, 훈련, 노동조건·생활조건, 노사관계 등 5개 분야에서 노동인권에 관한 상세한 지침 제공
SA 8000 (1997년)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기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규범으로, 감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는 최초의 사회적 인증 규범 · 아동노동, 강제노동, 건강·안전, 결사의 자유, 차별, 징계, 근로시간, 보수, 관리 등 인권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노동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1998년)	· ILO가 제시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의 폐지, 아동노동의 철폐, 작업장 차별의 금지 등 8개 핵심협약을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 명확화
UN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 (1999년)	· 세계인권선언, 노동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UN 부패방지협약 등을 기초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 제시
GRI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2000년)	· 투자,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노동, 강제노동, 보안 정책, 지역주민 인권 평가, 공급자 인권영향평가, 인권 고충처리 메커니즘 등에 관한 보고 요구
ISO 26000 (2010년)	· ‘사회책임에 대한 지침’으로, 기업, 정부, 소비자, 노동계, NGO, 서비스 등 6대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 제시 · 환경, 인권, 노동관행, 지배구조,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로 구분하여 구체적 기준 제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2011년)	· 2008년 채택한 ‘기업과 인권을 위한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을 위한 이행원칙 · 보호, 존중, 구제의 3대 축으로 구축
ILO 폭력 및 괴롭힘 협약 (2021년)	· 직장에서의 폭력·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최초의 국제협약 · 모든 노동자들이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인정하고 공동의 이행체계 제시
EU 환경·인권실사 의무화법 (2024년 시행 예정)	· 기업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보호 등 현황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도입 추진

2) 인권경영 관련 국외 정부 동향

<표 2-2> 인권경영 관련 국외 정부 동향

구분	내용
<p>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 (201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판 노예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최고 형량을 기존의 14년에서 종신형으로 강화하고, 범법자의 재산을 철저히 몰수하는 근거 마련 · 회사가 공급망과 회사에서 노예제 및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한 조치 혹은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명시하는 문서를 회사 대표에게 승인을 받고 공시해야 함 · 적용대상 : 제품·서비스를 공급하고 내무부 시행령에 규정된 매출을 초과하는 회사
<p>프랑스 기업인권 모니터링의무법 (2017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뿐 아니라 국외 노동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으로, 인권 전반에 대한 기업실사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화 · 적용대상 : 대기업(고용인원 5,000명 이상)
<p>독일 공급망 실사법 (2023년 시행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 보호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안 · 대상 : 독일에 주된 소재지를 두며,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 기업 당사의 사업영역 및 직·간접적 공급업체에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관리 의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법 적용 대상 기업 모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 2단계 : 인권 및 환경권 침해 리스크가 확인된 경우 - 3단계 : 인권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p>덴마크 인권평가 지침 및 진단도구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여개 국제 인권협약 및 협정에 기초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당사의 인권 관련 기업 관행을 평가 또는 비인권적 관행을 교정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진단도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계획 및 범위 설정 - 2단계 : 데이터 수집 및 기준 개발 - 3단계 : 영향분석 - 4단계 : 영향 완화 및 관리 - 5단계 : 보고 및 평가

3) 인권경영에 관한 국내 정부 동향

<표 2-3> 인권경영 관련 국내 정부 동향

구분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년)」 수립 ·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수립(2022.07.)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발간(2014.09.)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발간(2018.08.)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제안(2022.03.)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제3차 기본계획 수립·공표(2018.08.07.) ·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2020.06.) ·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발간(2021.12.) ·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1.12.28.) ·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 제정(2022.02)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배포(2019.02.)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발표(2021.0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 증진을 위해 매년 연구기관 평가 실시 · 연구기관 평가는 연구 분야(800점)+경영 분야(200점)으로 총 1,000점 만점으로 평점 집계 · 평가항목 중 ‘윤리경영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과 실적’의 평가 내용으로 인권경영 추진 노력 및 성과 포함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14개 주요업무 수립 · 성희롱·성폭력 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 구성·운영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설치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제재 규정 신설 및 시행(2021.10.14.)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개최 및 「K-ESG가이드라인」 발표(2021.12.) · 정보공시(P),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 항목으로 구성되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됨

2. STEPI 인권경영 추진현황

<표 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권경영 실행체계 현황 및 개선의견

실행체계	내용	
① 인권경영 추진체계	현황	· 인권경영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기관의 인권경영 추진방향을 나타내는 체계 정립 필요
	개선 의견	· 비전 : 세계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글로벌 인권경영 선도기관 · 목표 : 인권중심 제도 강화와 공감대 형성으로 인권존중 문화 확산 · 추진전략 : 인권경영 체제 정비 / 인권존중 활동 확대 / 인권침해 위험요소 예방
② 기관장 및 고위직의 인권경영 추진의지	현황	· 기관장의 확고한 인식 및 그 선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솔선수범 노력 필요
	개선 의견	· 홈페이지 내 '원장 인권경영 메시지' 게시 또는 기존 '원장 인사말' 페이지에 인권경영 의지 표명 문구 추가 · SMS(문자), 동영상(유튜브) 등을 통해 인권경영 메시지 전파
③ 인권경영 추진조직	현황	· 심의·의결기구 : 인권경영위원회 · 주관부서 : 인사관리팀 · 감시부서 : 감사실
	개선 의견	· 원장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 · 인권경영위원회 회의 내용 홈페이지 공개 · 부서별 인권지킴이 선정
④ 인권경영 규정	현황	· 인권경영헌장 · 인권경영 규정(2018.11.22. 제정)
	개선 의견	· 향후 지속적인 규정 검토를 통해 인권경영 이행령 강화 필요
⑤ 인권경영 평가시스템	현황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2019년~)
	개선 의견	· 지속적 인권리스크 발굴(인권영향평가 지속 실시) ·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상황 모니터링(인권실태조사)
⑥ 인권침해 구제제도	현황	· 인권경영 규정을 통해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화 · 홈페이지 내 '인권침해 신고' 페이지 운영(2~3번 클릭 시 접속 가능)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
	개선 의견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신고채널 바로가기 배너 설치 ·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강화(리플릿, 포스터 등 제작)
⑦ 인권경영 교육 및 공감대 확산 프로그램	현황	·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개선 의견	· 인권교육 지속 실시 필요 · 임직원 대상 공감대 확산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Ⅲ 인권영향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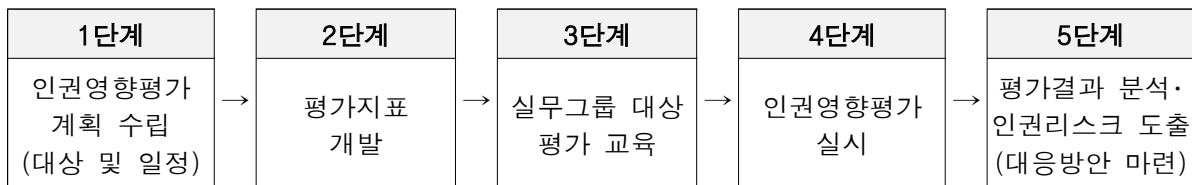
1. 인권영향평가 개요

1) 인권영향평가 의의

-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이 사업 수행의 결과 또는 그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의미함
- 인권영향평가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 제시하는 인권 실천·점검의무의 핵심 도구로, 평가 과정을 통해 기관 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
-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로 구분됨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기관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함(10개 분야, 28개 항목, 102개 세부지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의미함. 연구원의 2022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연구사업’으로 선정함(3개 분야, 9개 항목, 31개 세부지표)

2)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

<표 3-1>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



3) 인권영향평가 지표체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서 제시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체계를 기반으로 한 2021년
지표체계를 유지하되, 기관 특성을 고려한 지표 개선(추가, 삭제, 문구 수정 등)
및 사회적 이슈 반영 등을 통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하였음
- 2022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작년과 동일하게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함. 2021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기본연구사업 관리규정」을 참
고로 하여 지표를 고도화하였음
-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지표, 평가 취지와 맞지 않거나 기
관의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미 다른 지표에서 내
용을 포괄하고 있는 지표 등은 삭제함. 또한, 지표 내용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일부 용어를 수정함

<표 3-2> 인권영향평가 지표체계

2021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2022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평가분야	총계		평가분야	총계
기 관 운 영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4	기 관 운 영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5
	② 고용상의 비차별	16		② 고용상의 비차별	16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3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2
	④ 강제 노동의 금지	8		④ 강제 노동의 금지	7
	⑤ 아동노동의 금지	3		⑤ 아동노동의 금지	2
	⑥ 산업안전 보장	13		⑥ 산업안전 보장	13
	⑦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관리	6		⑦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관리	5
	⑧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5		⑧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4
	⑨ 환경권 보장	8		⑨ 환경권 보장	10
	⑩ 고객 인권 보호	8		⑩ 고객 인권 보호	8
	합계	104		합계	102
주 요 사 업	① 책임있는 연구관리	9	주 요 사 업	① 책임있는 연구관리	11
	② 국민 및 고객 인권 보호	11		② 국민 및 고객 인권 보호	11
	③ 연구사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9		③ 연구사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9
	합계	29		합계	31

<표 3-3> 2022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체계

분야	항목	지표 총계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 인권존중 정책선언	5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4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6
	[4] 인권경영 성과	4
	[5] 구제절차 마련	6
② 고용상의 비차별	[6] 고용상 비차별	5
	[7] 고용상 남녀비차별	6
	[8]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2
	[9]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0]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4
	[11]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4
	[12]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4
④ 강제 노동의 금지	[13] 강제노동 금지	5
	[14]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2
⑤ 아동노동의 금지	[15] 연소자 고용 금지	2
⑥ 산업안전 보장	[16] 근무 공간에 대한 안전	4
	[17]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
	[18]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3
	[19]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2
⑦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관리	[20] 협력회사 등의 인권경영 실천 지원	3
	[21] 모니터링 실시	2
⑧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22]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
	[23] 지식재산권 보호	3
⑨ 환경권 보장	[24]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	3
	[25]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4
	[26] 비상계획 수립	3
⑩ 고객 인권 보호	[27]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2
	[31] 고객 정보 보호	6
합계		102

<표 3-4> 2022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체계

분야	항목	지표 총계
① 책임있는 연구관리	[1] 연구관리 및 평가	7
	[2] 연구윤리 준수	4
② 국민 및 고객 인권 보호	[3] 연구 관련 정보 제공	3
	[4] 연구성과 이상 시 조치	2
	[5] 인권침해 예방	3
	[6] 고충처리제도	3
③ 연구사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7] 차별대우	2
	[8] 연구환경	2
	[9] 고충처리제도	5
합계		31

2.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 결과

- 2022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전체 102개 평가지표 중 99개 지표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긍정률 약 97.1%)
- 3개 지표에서 ‘아니요’로 평가되었고,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협력회사 인권경영 모니터링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음
-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31개 평가지표 중 30개 지표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1개 지표에서 ‘해당없음’으로 평가됨

<표 3-5> 2022년 인권영향평가 점검 결과 요약

평가분야	총계	점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기관운영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5	25			
	② 고용상의 비차별	16	16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2	12			
	④ 강제 노동의 금지	7	6	1		
	⑤ 아동노동의 금지	2	2			
	⑥ 산업안전 보장	13	13			
	⑦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관리	5	3	2		
	⑧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4	4			
	⑨ 환경권 보장	10	10			
	⑩ 고객 인권 보호	8	8			
합계	102	99		3		
주요사업	① 책임있는 연구관리	11	11			
	② 국민 및 고객 인권 보호	11	10			1
	③ 연구사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9	9			
합계	31	30			1	

* 세부지표별 평가 결과는 [붙임] 참고

2) 인권리스크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3개의 인권리스크가 도출됨. 이는 모두 협력회사 관리에 관한 지표로, 단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규정 또는 청렴계약서(서약서) 개정, 협력회사 대상 리플릿 및 자체 체크리스트 배포 등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수준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임

<표 3-6> 인권리스크별 개선 조치사항

인권리스크	개선 조치사항	
①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지표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선방안	협력회사 대상 인권경영 매뉴얼, 리플릿 배포 또는 인권선언문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인권침해 노동에 대한 경각심 제고
② 협력회사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	지표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개선방안	<p>협력회사 대상 인권경영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등 인권경영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연구·마련</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협력회사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내용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추진체계 수립 -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고용상 비차별(여성,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 구제절차(고충처리제도) 운영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산업안전 보장(보호장비 제공, 건강검진, 산업재해보상 등) </div>
③ 협력회사 인권침해 발생 시 시정 요구	지표	연구원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한다.
	개선방안	<p>인권경영 규정 개정 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활용하여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연구원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청렴계약서 개정(안)></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계약업무지침」 제38조 제5항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인권경영 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u>연구원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u>,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p> </div>

3) 인권영향평가 결과 분석의견

- 연구원은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 보완과 실태 파악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 2021년 인권영향평가에서 도출된 인권리스크가 2022년 인권영향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다만, 이는 대부분 협력회사에 대한 관리 부분으로,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현 시점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대한 보완·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인권경영을 확산할 것을 권고함

<표 3-7> 인권영향평가 결과 분석

2021년 인권리스크	2022년 인권리스크	비고
① 인권정책선언 정기적 재검토 및 개선	개선완료	규정개선 TF 구성하여 인권경영 규정 검토 및 개선 추진 노력
②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①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개선의견 제언
③ 협력회사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	② 협력회사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	개선의견 제언
④ 협력회사 인권침해 발생 시 시정 요구	③ 협력회사 인권침해 발생 시 시정 요구	개선의견 제언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인 정책 운영 및 실천 확산을 위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보완필요’ 및 ‘아니요’로 평가된 지표에 대한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예’로 평가된 지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과 실천적 노력을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인권경영을 시행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수준 높은 인권보호·존중 의무를 완수할 필요가 있음